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종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613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9일

발 의 자: 이종배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성연, 박영한, 박환희, 서상열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아이수루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유정희, 윤기섭, 윤영희, 이봉준, 이상욱, 이종태, 이종환, 이효원, 최민규, 최유희, 최진혁, 허·훈, 홍국표 의원(41명)

1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해제되어감에도 지역 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바,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, 관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개보수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, 학교 내 다양한 시설 확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- 또한 생활체육포털 운영을 통한 공공체육시설 정보 접근성 강화를 조례에 명시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체육시설 홍보에 관한 운영 지원을 명시함(안 제16조제8호 신설).

나. 관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개보수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, 학교 내 다양한 시설 확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(안 제18조제5항 신설)

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생활체육진흥법」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관내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

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시장은 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·이용되는 관내 학교의 체육시설의 관리·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관내 학교의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